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안 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된 공단, 그 밖의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1)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 개발 및 판매 지원
 -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 그 밖에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등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매의무 범위를 정함

-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품목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함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으로부터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다.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1)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상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2)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584호)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09. 12. 10. ~ 12. 30.(제출된 의견 없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 개발 및 판매 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구민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구매목표금액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 · 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

제10조(친환경상품 생산 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친환경상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의 친환경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